

# 국민대 투자재무학회 회칙



# KIFA.

Kookmin University  
Investment&Finance Assosiation

## 국민대학교 투자재무학회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국민대학교 투자재무학회(이하, 학회 또는 KIFA)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취업 및 이직을 위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교육을 통한 후배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재학회원, 졸업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회원의 자격)

1. 재학회원은 투자재무학회 커리큘럼에 참여 중인 자로 재학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졸업회원은 투자재무학회 커리큘럼을 졸업한 자로 졸업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1. 본회의 재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졸업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1. 학회비를 1년 치 이상 미납 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2. 재학회원의 경우 학회 교육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재학회원 과반수의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1항의 경우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과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학회임원 : 각 기수별 2인
  - 동문회장 : 1인
2. 학회임원의 임기는 1년, 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선임 전까지 선임자가 계속 집무한다.

### 제9조(동기임원 선임과 직무)

1. 동기임원은 학회장과 학회부회장으로 구성된다.
2. 동기임원은 재학회원중에서 재학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임한다.
3. 학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재학생 및 졸업생 행사 주관
  - 학회활동 관련 건의 및 강의관련사항 소통
  - 학회행사 대표 참여 및 타 학회와 교류
4. 학회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학회 계정 및 홈페이지 관리
  - 학회원(졸업생,재학생) 연락망 관리

### 제10조(동문회장 선임과 직무)

1. 동문회장은 졸업회원 중 추천으로 선임하며, 필요 시 선거를 진행한다.
2. 동문회장은 임기 종료 시, 졸업회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재임할 수 있다.
3. 동문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졸업회원의 대표자격
  - 졸업회원의 행사주최 및 참여

### 제11조(임원의 해임)

1. 본회 회원자격이 상실된 임원은 자동 해임된다.

2. 임원의 해임은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해야한다.

## 제4장 총회

### 제1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 진행하며, 총회일 30일 전에 전체 학회원에게 공지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원이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한 이유와 안건을 제시하여 본회 구성원 10명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학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3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제3장 임원에 관련한 사항
  - 제5장 재정에 관련한 사항
  - 제6장 회칙에 관련한 사항
  - 기타 회칙에 없는 중요사항
2. 정기총회 의결은 재학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의 동의로써 의결 한다.
3. 제5장 재정에 관련한 사항은 정기총회 의결 후 동문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제6장 회칙에 관련한 사항은 정기총회 의결 후 기수별 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학회 및 학교행사에 관련된 건
  - 학회활동에 관련된 건
  - 기타 정기총회에서 포함되지 않은 안건
2. 임시총회의 의결은 재학회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 제5장 재정

### 제15조(재정의 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학회 계정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한다.
3. 학회 일반계정은 학회부회장이 직접 개설 및 운용하며, 회비를 그 재원으로 한다.
4. 학회 특별계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학회 운영비를 포함하는 계정으로 학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5. 학회 행사 준비 시, 학회장은 동문회장의 승인을 받아 학회특별계정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6. 회비 외 기타 수입 발생 시에는 모두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
7. 특별계정의 운영비가 부족할 시, 일반계정의 재원으로 이를 부담한다.

### 제16조(회비)

1. 재학회원의 회비는 매 학기 3만원, 졸업회원의 회비는 매년 10만원으로 한다.
2. 재학회원 회비는 일반계정, 나머지는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
3. 졸업회원의 회비는 모두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

### 제17조(일반계정)

1. 일반계정은 재학회원들의 자치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2. 일반계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 재학회원 행사
  - 학술세미나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비용
  - 기타 동기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제18조(특별계정)

1. 특별계정은 모든 회원들을 위해 사용한다.
2. 특별계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
  -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조사(직계 존·비속에 한함)
  - 기념품 제작
  - 학회 홈페이지 관리비
  - 재학회원 및 졸업회원이 함께 참석 가능한 행사운영
  - 기타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제 19조(기금의 이동).

1. 제17조, 제18조의 필요에 의해 계정간 기금을 이동할 수 있다.
2. 15조 5항을 제외한 목적의 기금 이동은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2항의 내용은 제13조를 따른다.

#### **제 20조(결산)**

1. 학회부회장은 제9조 4항 계정관리를 담당하며 결산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2. 결산내역 보고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결산내역의 보고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 되어야한다.
5. 4항의 내용은 제13조를 따른다.

### **제 6장 회칙제정과 변경**

#### **제 21조(회칙제정)**

1.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해야 한다.
2. 1항의 내용은 제13조를 따른다.

#### **제 22조(회칙변경)**

1.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
2. 1항의 내용은 제 13조를 따른다.

###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2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